

# 지식재산권 규정

(제정 2007. 6. 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및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 협력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학생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등 의 산업체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신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 한다.
2. “직무발명”이란,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 · 설비 · 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5.3.23.>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 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 가.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개정 2015.3.23.>
  - 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개정 2015.3.23.>
4. “발명자”란, 발명을 한 교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3.23.>
5. “노하우(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 적 사항을 말한다.
6. “출원유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권리자가 타인에 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과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2.27.>
8.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신설 2018.4.25.>
9.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25.>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신지식재산권 포함)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승계한다.

② 공동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5.3.23.>

③ 산학협력단이 제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④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4조의2(권리의 유지 또는 포기)** 산학협력단은 승계 받은 지식재산권을 유지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등록 후 5년까지 권리를 유지하며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포기하며, 5년이 경과한 후 발명자가 권리 양도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술이전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건으로 서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
2.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산학협력단이 유지하되 발명자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발명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면 요청하고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의결된 경우

[본조신설 2015.3.23.]

**제5조(기술이전전담조직)**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은 산학협력단에 둔다.

##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6조(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2015.8.26.>

1. 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8.26.>
3. 발명의 내용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4. 선행기술 조사서(외국 출원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5. 저작권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18.4.25.>
6. 공동저작권자 보상금 지급 합의서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18.4.2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 후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

③ 발명신고서 내용 중 발명자 지분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명자는 발명자 지분 정정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제7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 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3.23.>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3.23.>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문서([별지 제5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제8조(승계시점 등)**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점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3.>

**제9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② 이의를 신청 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이의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3.23.>

③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정내용을 해당 발명자에게 문서([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제10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명을 승계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3.>

### 제3장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제11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3., 2015.8.26.>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3.23.>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지식재산권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實施許與)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8.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사전심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평가 시 필요에 따라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8.26.>

⑥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 제4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15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 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에게 문서([별지 제8호 서식])로 통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④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업무를 수행할 변리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리사 지정 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제16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 경우 해당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3.23.>

② 해외출원의 경우, 출원·등록·유지에 관한 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신설 2015.3.23.> <개정 2015.8.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5.3.23.>

④ 공동명의 출원의 경우, 특히 권리유지에 대한 합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출원·등록·유지에 관한 비용을 지원한다. <신설 2015.8.26.>

⑤ 공동출원인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공동출원인 포기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통해 권리 를 위임받아 단독출원 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 제5장 기술 이전

**제17조(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이하 “실시자”라 한다)로부터 실시권 설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발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실용화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발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공기업 출연 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이 기술 등의 실시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5.3.23.>

**제18조(계약조건 및 체결)** ① 기술이전의 계약체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통상 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의 비교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술료 :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기술실시에 따른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 ②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와 협의하여 기술이전조건을 설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발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9조(특례)** 실시자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나 성공적인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와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고 기술료를 일부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3.23.>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 사항과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은 이전기술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 제3자가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④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이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기술보증 및 배상)** 산학협력단 및 발명자는 실시자와 기술이전계약 시 산학협력단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산학협력 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대한 조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 제6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수입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산업계수탁연구, 자체연구 등 제1호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3조(기술료수입의 사용)** ①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 :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4조(사용절차)**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보상금 지급과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제7장 보상

**제25조(보상금의 지급)** ① 삭 제 <2015.3.23.>

②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 이내에서 다음의 기술이전 보상 비율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술이전 기여자는 산학협력단 보상비율에서 10%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5.3.23., 2015.12.27., 2018.9.1.>

구 분	보상비율	
	발명자	산학협력단
특 허	70%	30%
노하우	80%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교수 또는 계약직원은 임용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5.3.23.>

**제26조(공동발명자의 보상)** 제25조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지분대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3.>

**제27조(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이유로 무효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3.>

## 제8장 보최

**제29조(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30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3.>

**제31조(손해배상)** 발명자가 제6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3조(퇴직 또는 졸업 후의 취급)** 발명자가 퇴직 또는 졸업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3.23.>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lt;개정 2015.3.23., 2016.7.19.&gt;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직위 : 성명 : (인)

발명신고서					
기술분야	<input type="checkbox"/> BT <input type="checkbox"/> CT <input type="checkbox"/> ET <input type="checkbox"/> IT <input type="checkbox"/> NT <input type="checkbox"/> ST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술				
구분 / 영역	<input type="checkbox"/> 특허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상표 <input type="checkbox"/> 노하우 <input type="checkbox"/> 기타기술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발명자	성명	지분(%)	소속	전화번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공동출원자	기관명	담당자	지분율(%)	연락처	비용부담
	※공동출원사유 :				
관련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input type="checkbox"/> 논문발표 <input type="checkbox"/> 학술지 게재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발명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 <input type="checkbox"/> 자유발명				
특허비용부담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 지원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에서 계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연구노트의 관리여부 및 소재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본 발명과 관련된 특허					
위의 발명에 대하여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대표)자: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lt;개정 2015.3.23., 2015.8.26.&gt;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합의서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분율
발명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발명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발명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발명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발명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p>발명자는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며,      기술이전 시 발명자는 지식재산권규정 제25조(보상금의 지급)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p>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발명설명서(명세서)	
1.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p>[발명의 목적]            3.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p> <p>3.2 그 분야 종래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p> <p>3.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p>

발명설명서(명세서)	
	<p>[발명의 구성]</p> <p>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p> <p>    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p> <p>    나) 기능 및 작용</p> <p>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p> <p>    다) 실시예</p>
	<p>[발명의 효과]</p>
4. 특허청구범위	<p>4.1 청구항1</p> <p>4.2 청구항2</p> <p>4.3 청구항3</p>

[별지 제4호 서식]

<b>선행기술 조사서</b>			
제출자(발명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제출일자	
<b>1. 선행기술과의 대비</b>			
기존 특허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본 발명 대비 신규성 (어떤 점이 새로운가?)	본 발명 대비 진보성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b>2.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b>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기술 요약	참고문헌과 비교시 본 발명의 특징	

[별지 제5호 서식]

통지일자	
수령자	직위 :
	성명 : (인)

심사결과 통지서	
문서(접수)번호	
수신(발명자)	
발명의 명칭	
제 목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지식재산권규정 제9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직무발명 여부	
2. 산학협력단의 승계 여부	
3. 특허성의 등급결정	
4. 국내외 출원여부	
5. 출원시 심사청구여부	
6. 기타	
20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별지 제6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주 소			
접 수 일 자	20 . .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신청이유]				
1. 제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제25조제2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p>상기 본인은 지식재산권규정 제9조에 따라 20 년 월 일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장(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수신	
발명의명칭	
제목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지식재산권규정 제9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신청 이유(요약)	
2. 결정 내용	
20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별지 제8호 서식]

출원 통지서		
문서 번호		
수신		
발명의 명칭		
발명자		
지식재산권규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여부 등을 통지합니다.		
권리 내용		
출원 여부		
출원 일자		출원 번호
미출원 이유		
20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부 : 출원명세서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5.8.26.>

## 특허 권리유지에 대한 합의서

- 특허명 :  
 출원번호 : 제10-0000-0000000호

“20○○년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상기 결과물에 대하여 공동 권리자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 다음과 같이 상기 특허권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고 이행한다.”

**제1조(특허대상)** 본 합의서에서 상기에 명시한 특허권을 말한다.

**제2조(권리유지)** ① 본 합의서 체결 후 즉시 상기 특허권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동 출원인이 각각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며, 권리유지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각기 가변적일시 공동출원인 상호 서면합의를 통해 정한다.

② 공동출원인 모두는 상기 특허권 권리유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조(합의서 해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 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시 본 합의서를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공동출원인 어느 한쪽이 특허권 권리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2. 공동출원인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
3. 상기 특허권으로 파생된 제반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제4조(권리행사 승계)** ① 본 합의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기 특허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무료로 승계해야 하며, 제반비용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

②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 변경)** 본 합의서 내용의 변경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과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6조(불가항력)**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중요사항 변경)** 공동출원인이 본 합의서 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촉오는 통보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귀책 된다.

**제8조(분쟁해결)** 본 합의서의 내용이나 혹은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권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분쟁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합의서 효력)** 본 합의서는 공동출원인이 모두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본 합의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의 기명 날인 후 공동출원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 00. 00.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잡로 303

기관명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 산학협력단장 (인)

담당자 : 특허담당 (인)

주 소 :

상 호 : 주식회사 ○○○○○

대 표 : (인)

※합의서 필수서류 :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증명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lt;신설 2016.7.19.&gt;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직위: 성명: (인)

### 발명자 지분 정정신고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발명자 (변경전)	성명	지분(%)	소속	전화번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발명자 (변경후)	성명	지분(%)	소속	전화번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위의 발명을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정정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대표)자: (인)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위원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8.4.25.>

### 변리사 지정 신고서

발명의 명칭	한글 : 영문 :
발명자	

상기 발명의 특허출원 등을 위한 대리인으로 아래 변리사를 선임함.

1. 변리사 사무소 :

2. 대표변리사 :

3. 담당변리사 :

4. 연락처

가. 주 소 :

나. E-Mail :

다. 전 화 :

20 년 월 일

대표 발명자 : 대학 학과

성명 :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8.4.25.>

## 공동출원인 포기확인서

- 특허명 :  
 출원번호 : 제10-0000-0000000호

“20○○년도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상기 결과물에 대하여 ○○○○○는 다음과 같이 공동출원인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1. [확인대상] 본 확인서에 명시한 결과물을 말한다.
  2. [권리포기 및 효력] ①본 확인서 날인과 동시에 상기 결과물의 권리는 전주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독소유가 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인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②또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년 ○○월 ○○일

### [ 확인자 ]

성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 확인서 필수서류 : 인

※ 확인서 필수서류 :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증명서 1부 첨부.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lt;신설 2018.4.25.&gt;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직위 : 성명 : (인)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 작 권 자	성명	(한글) (영문)	(한자)
	주민등록번호	-	기술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저 작 물	제호		
	종류		형태 및 수량
저작권 등록 내용			
창작연월일			
공표의여부			
저작물 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저작물	<input type="checkbox"/> 공동저작물	<input type="checkbox"/> 결합저작물
발명의종류	<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	<input type="checkbox"/> 자유발명	
저작권등록비용부담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 지원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에서 계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기 창작물에 대하여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와 저작권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고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b>※첨부서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li> <li>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li> </ol>			

[별지 제14호 서식] &lt;신설 2018.4.25.&gt;

공동저작권자 보상금 지급 합의서				
창작물 제 호				
저작권 번 호				기여도
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연락처	
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연락처	
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연락처	
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연락처	
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연락처	
창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input type="checkbox"/> 내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연락처	
<p>창작자는 위 제호에 대한 권리를 전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6조에 따라 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양도하며, 기술이전시 창작자는 지식재산권규정 제25조(보상금의 지급) 2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p>				
년        월        일				
<b>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b>				